<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www.gamtan.co.kr

[감탄떡볶이]

정 보 공 개 서

[(주)오투스페이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오투스페이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86, 4층]

[대표전화번호: 1688-5889] [대표팩스번호 : 02-2043-5982]

[가맹 사업부 : 1688-5889 내선 1번]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림	<u> </u>	주 소				
	감탄떡볶이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86, 4층				
(주)오투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스페이스	2008.03.26.		2008.03.26.	이경수	1688-5889		02-2043-5982
	법인등록번호	11011	1-3867318	사업자등록	<u>번호</u> 215-8		87-13258

^{- 2008}년 3월부터 일반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86, 4층				
대표이사	이경수	감탄떡볶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경수	1688-5889	02-2043-598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구역	의강변로 86, 4층			
이사	이은숙	감탄떡볶이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경수	1688-5889	02-2043-598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0174	기미 스키니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86, 4층				
이사	이경수 (주)도시방앗간	가마솥김밥 외 1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u> </u>	이준=	ት	1688-7989		02-2043-5982
	법인등록번호	11011°	1-5579474	사입	다등록번호		822-81-0020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감탄떡볶이 1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감탄떡볶이	
상 호	감탄떡볶이 OO점	
상표(서비스표)	맛있으면 먹는다 흥 감 등 떡볶이	출원:제4520150011358호(2015.12.14) 등록:제4500674190000호(2016.08.23)
상표(서비스표)	맛있으면 먹는다, 甘呑떡볶이	출원:제4120150032386호(2015.07.08) 등록:제4103491220000호(2016.02.18)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1,557,537	3,621,548	7,935,989	13,803,536	245,422	55,181
2022년	11,578,809	3,632,225	7,946,583	14,279,188	159,716	10,594
2023년	10,811,900	2,862,391	7,949,509	13,730,780	135,696	2,925

[※재무제표를 참조하세요.]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오투스페이스는 감탄떡볶이(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원인어구	이듬	선 역기	기간	직위	담당 업무		
			2019.01~현재	(주)오투스페이스			
71 711 11 01	가맹사업 이경수 관련 임원	수 대표이사	2019.01~ 단세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2015.09~현재	(주)도시방앗간 이사	가맹점관리		
	이은숙	이사	2015.07~현재	(주)오투스페이스 이사	가맹점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검	상근	비상근	역원구(당)	
2023년 12월 31일	2	0	4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사업경영	2015.09 ~ 현재	가마솥김밥(기타외식)
	(주)도시방앗간	(이사)	2015.09 ~ 원제	- 등록번호 : 20150300
	(〒)포시당첫선 	가맹사업경영	2017.04	가마솥국밥・보쌈(한식)
l 이경수		(이사)	2017.04 ~	- 등록번호 : 20170380
9101		가맹사업경영	2019.01.01	감탄 떡볶이
	(주)오투스페이스	(대표이사)	~ 현재	-등록번호:20170454
		(구)오투스페이스 가맹사업경영		핫도리식당
		(대표이사)	2023.11.24	-등록번호:20211092(자진취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감탄떡볶이 (상표권)	상호.상표. 휘장 사용	2015.12.14. 출원 2016.08.23. 등록	출원 제4520150011358호 등록 제4500674190000호	이경수	2026.08.23 (2017.03.02~2 027.03.01)
감탄떡볶이	상호.상표	2015.07.08. 출원	출원	이경수	2026.02.18

			제4120150032386호	(2017.02.022
(상표권)	휘장 사용	2016.02.18. 등록	등록	(2017.03.02~2 027.03.01)
			제4103491220000호	027.03.0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오투스페이스(을)는 2017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 지식재산권 소유권자인 이경수 대표이사(갑)로부터 감탄떡볶이 상호,상표 및 휘장 사용에 대해 허가 받았습니다.*

п. 가맹본부의 [감탄떡볶이]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7년 4월 1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7년 04월 11일)

2. [감탄떡볶이]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오투스페이스	감탄떡볶이	이준수	2017.04.20~2018.12.31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20, 201호
(주)오투스페이스	감탄떡볶이	이경수	2019.01.01~2022.05.12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20, 201호
(주)오투스페이스	감탄떡볶이	이경수	2022.05.13~현재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86, 4층 (사업자 주소 이전)

3. [감탄떡볶이] 업종

영업표지	업종		
감탄떡볶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김선칙森이 	분식	떡볶이, 튀김, 순대, 우동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감탄떡볶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á	2021.12.31			2022.12.3	1		2023.12.3	1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76	275	1	245	244	1	211	210	1
서울	46	45	1	46	45	1	43	42	1
부산	5	5	-	4	4	-	2	2	-
대구	1	1	-	1	1	-	1	1	-
인천	26	26	-	24	24	-	16	16	-
광주	4	4	-	4	4	-	3	3	-
대전	3	3	-	2	2	-	2	2	-
울산	3	3	-	2	2	-	2	2	-
세종	1	1	-	-	-	-	-	-	-
경기	109	109	-	93	93	-	86	86	-
강원	4	4	-	4	4	-	5	5	-
충북	10	10	-	8	8	-	6	6	-
충남	11	11	-	12	12	-	9	9	-
전북	30	30	-	23	23	-	20	20	-
전남	6	6	-	6	6	-	5	5	-
경북	4	4	-	3	3	-	3	3	-

경남	12	12	-	12	12	-	8	8	-
제주	1	1	-	1	1	-	-	-	-

5. 바로 전 3년간 [감탄떡볶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13	13	0	51	16	275
2022	275	14		45		244
2023	244	4	0	38	8	210

6. [감탄떡볶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감탄떡볶이]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민	생점/직영점으	수
下世	6오/이금	OH파시	등록번호	П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오투 스페이스	핫도리식당	20211092	한식	0/1	0/0	0/0
특수관계인 (이사)	도시방앗간 /이경수	가마솥김밥	20150300	한식	7/0	5/0	5/0
특수관계인 (이사)	도시방앗간 /이경수	가마솥 순대국밥	20170380	한식	11/0	10/0	37/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감탄떡볶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다만, 2023년 신규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 이 안되는 곳은 일평균 매출액으로 산정 후 1년으로 환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매출액 =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3.33
- 당사에서 물류업체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강제+권장) 공급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원가율)이 30% 내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 다만, 권장 물품의 경우 구매여부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맹점별 실제 구매 물품량을 알 수 없기에 위에 적힌 매출액은 추정매출액일 뿐입니다.

- 게다가, 당사 브랜드의 특성상 1인분 판매량이 매장마다 상이하기에, 물품 원가율 30% 역시 추정치이 거나 평균치입니다.

[당사공급 물품외 협력업체의 물품 및 개인적 물품구매(사입)는 제외한 매출액입니다.]

-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210개가 아닌 실제 208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감탄떡볶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감탄떡볶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10	2,16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감탄떡볶이]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감탄떡볶이]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단위	지출 비용 I: 천원, 부가세		비고
, E	1 -	1 -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1
합계			119,480	45,266	74,214	
71.7	소계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광고	(비공개)	1년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1년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1년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1년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1년	(비공개)	-	(비공개)	

^{*}가맹점 기재 비용은 가맹점에서 별도로 사용한 광고비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예금부		기업은행 484-2353 (내선 590번)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지점 [기업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후 " 부가서비스->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 메뉴를 클릭후 예치하시던가 아니면 가까운 기업은행에 본사계약시 받은 서식을 가지고 현장방문 하셔서 가맹금 예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감탄떡볶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계약금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영업을 시작하면 가입비로 대체
가입비	7,7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교육비	1,1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종료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납금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0,800
가입비	7,700
교육비	1,100
계약이행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 당사는 오픈 후에 부가세를 받습니다.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8,018]				33m² 기준
주방기기 및 집기(그릇)	협력업체	10,970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33㎡ 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16,000	1,6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3.3m²늘어날 때마다 1,600천원 추가부담
간판,홍보물	협력업체	6,168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주)오투스페이스	4,000		물품 공급후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본사초도물량
POS	협력업체	880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기획관리비의 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할 경우에 한해서 청구합니다. ② 비용은 본사에서 위탁한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합니다. ③ 금액은 평당 300,000원입니다.(지방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사항: 철거/ 닥트시설 / 샤시공사 / 가스시설 / 냉・난방시설 / 식기세척기 / 전기승압 / 컵셉외 시설,화장실 / 점포외부공사 / 기타 별도.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가맹계약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주소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 부를 구함
(전화:1688-5889)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오픈한 매장의 상권이 변했거나 가맹본부의 예상매출금액 기준 미달인 가맹점의 경우, 본사가 이전을 권할 수 있다.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가맹사업자가 추가로 부담 한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신용불랑자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감탄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천원)		총액의 10%	15%	15%	60%
납부일		본사계약일	인테리어 계약일	오픈 D-30	오픈 D-1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 열 티	가맹본부	가맹점 당월 매출액의 2%	익월 11일			일부매장에 한함 (특수상권 임대매장, 대형쇼핑몰매장 등)
광고 분담금	(주)오투스페이스	행사별로 분담 등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또는 체결	판촉 동의 · 약정서 이후에는 리지 않음	-
교육훈련비	(주)오투스페이스	165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점포환경 개선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8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주)오투스페이스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금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액가맹금 및 지급금액의 비율은, 당사에서 지불하는 물류구매 비용(관리 인건비, 물류 보관 및 유통 손실분) 및 기타비용(창고비 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실제 수치보다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 당사의 명의인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귀하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인 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차액가맹금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4~8주일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4~8주일	본사 SV팀
메뉴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4~8주일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오투스페이스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30]				
재계약이행비	330	교육시작 7일 이전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해지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 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 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감탄떡볶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오투스 페이스]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310]				변경될수 있음
교육비 및 기본경비	재계약시점의 가입비 30%	교육 시작 3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영업개시후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후 3일이내	계약해지후 20일 이내	신규가입자와 동일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해지 및 종료된 경우에는 감탄떡볶이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 (정산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받은 때로부터),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손 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즉시 상호.상표.서비스표.휘장.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해야 합니다.

위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가,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오투스페이스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감탄떡볶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감탄떡볶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가 [감탄떡볶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상품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새로운 상품이나 가맹본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가맹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이기에 위생 및 음식 맛 보전을 위해 현장조리/현장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합법적 조리시설(영업허가증 발급)이 아닌 곳에서 조리 및 영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조리했을지라도, 포장 후 장소를 이동해 진열 후 판매하거나, 포장 후 배송 판매하는 것을 제한한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가맹본부로부터 물류가 중단된 지점이나, 동일 경쟁업체 가맹점 사업자, 일반타업자에게 상품,자재를 제공하거나 판매 및 대여 할 수 없다.
- 위반시 책임 : 1회 위반: 구두 경고 /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본부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판매가를 변경 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합창 담치	가맹본부	계열회사	
떡볶이, 튀김, 순대, 탕수육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감탄떡볶이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지점간의 직선거리는 300m에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구획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자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 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감탄떡볶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감탄떡볶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 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9.36	0.64	해당없음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감탄떡볶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시 계약기간도 동일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감탄떡볶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1.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자재 및 시설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정규교육비, 광고비등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계약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의 또는 약정한 광고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노후된 점포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가맹점사업자가 본사에서 정한 재료와 요리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11.가맹점사업자가 본사가 정하지 않은 다른 업체의 재료 및 집기류를 납품받는 경우
12.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감독 시정의뢰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13. 가맹사업자가 지정된 상품, 용역외 다른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14. 가맹사업자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15 가맹사업자가 지정된 상품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은 경우
16.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 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도인이 기존 운영지점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양수인에게 충실히 제공할 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 혹은 유선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3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 기간동안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양수인의 요청시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금은 정보공개서 (IV-4)항에 정한대로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중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절차와 동일	
대리행사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동안 귀하가 [감탄떡볶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분식류를 제공하되 감탄떡볶이 가맹점과 같은 메뉴구조나 메뉴 레시피의 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상권개발팀 (1688-588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감탄떡볶이]의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으나,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28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해당없음	월 26일이상 개장 및 3일이상 휴업금지	문의: 기획팀 (1688-588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23㎡~33㎡) (정직원 또는 파트타임 1명)+사장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3명 이상(33m²이상~) (정직원2명)+사장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단, 위의 내용은 가맹운영관련 근무형태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가맹점 매출 추이 상황에 따라 추가 및 변동이 가능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4~8주일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4~8주일	본사 SV팀	
메뉴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4~8주일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오투스페이스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감탄떡볶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광고>
광고	전국	브랜드광고	가맹사업법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및 지역별 광고	브랜드 광고 + 가맹점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모집광고			<판촉>
	전국 및 지역별판촉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판촉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판촉		-	100%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오픈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모든 광고, 판촉은 본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제 39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10P~13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1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0~3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상담후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정보공개서 받은후 14일이후 체결가능)	D-25~24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D-23	10,000
가맹금 예치	- 기업은행 기관에 방문하여 가맹금 예치	D-22(1일)	10,000
점포실측/설계	- 인테리어 계약금	D-21(1일)	10,000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0(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19~3(16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본사이론교육1일,현장교육4일)	D-5(5일간)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오픈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ᄀᆸᄜᆌ야ᅥᆌᄸ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이
3	가맹계약 체결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 구성	분쟁 해결 절차	비고
- 가맹점관리 담당임원: 1명		
- 외부 전문가: 3명	분쟁 해결 신청 → 접수 → 사실관계 조사	문의: 상생협력위원회
- 기맹점사업자협의회	(15일 내외) → 위원회 개최 및 결정	기획팀(1688-5889)
대표: 1명(총 5인)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전교이되서 자비이테기이 드이 나중심기 개기된이고 이렇다! 그건
점포 환경개선 사유	ㅇ점포의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집기·장비교체비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 -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J
------	-------	------	------	------	----	---

판촉장려금	우수 매장 분기마다 선정, 최우수 매장 연 1회 선정하여 장려금 지원	오픈 후 6개월 이상된 매장으로 판매 및 매장관리 우수한 점포 선정	가맹계약기간	100만원 한도	
판촉 지원	행사 긴간동안 일부 품목 단가 지원	매출 저조 매장	행사기간	당사 부담	익월 상품대금 차감방식 <u>으로</u> 지원
행사지원	시즌행사(가정의 달, 연말연시, 판매 비수기)시 식자재 단가 지원	전 가맹점	행사기간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SV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1688-5889)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감탄떡볶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감탄떡볶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이론교육	회사 소개 메뉴 레시피 이론교육 및 매뉴얼 교육	이론교육(1일)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레시피메뉴교육	메뉴실습교육 및 실전 매장운영	실습교육(4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필수적으로 이수
재교육	메뉴실습교육	실습교육	필요에 따라	관리점검대상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감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5일(이론1일+실습4일)	1,100	최초 계약시 이수
신규 교육후 연장 재교육	1일	330	연장 재교육 대상시 필수적으로 이수
관리점검대상 재교육	1일	165	관리점검 대상시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본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본구성원으로 받지 못하시거나 가맹계약 당사자만 이수할 경우 오픈 및 재교육이 연장되거나 다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1조에 따라 오픈전 5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오픈일자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1조에 따라 관리점검대상 지목후 5일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감탄떡볶이 롯데마트강변점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지하2층 (구의동,테크노마트21)

[상기 직영점 감탄떡볶이 롯데마트 강변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5년 2개월	오픈 : 2018년 10월 31일

<참고사항> 상기 직영점은,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옮겨 재오픈한 매장입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별첨1 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 *상기 내역 중 거래상대방 권장품목을 지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이 아닌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품목은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귀하가 직접 자체조달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 시 차액가맹금 및 판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첨1_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 원, VAT미포함)

- 2023 손익계산서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3 손익계산서(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 재무상태표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 재무상태표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2년 재무상태표 (1)

- 2022년 재무상태표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2년 손익계산서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2년 손익계산서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제조원가명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 재무상태표

-2021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 제조원가명세서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형	}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가 .		
	- - -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상호(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 「가맹사업거래 의 7 제 2 항에 I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힙	! 같은 법 시행 나니다.	령 제 5 조
			년 월	일
	1	신청인	(서명 5	드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계약팀(1688-5889)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gamtan.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